

## 「전기공사업법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시송달 공고

「전기공사업법」 제28조제1항 등록기준미달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 1개월)을  
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 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대 구 광 역 시 장



1. 공고내용 :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 1개월)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6. 6. 29. ~ 2026. 7. 13.(15일간)
3. 처분내용 : 영업정지 1개월(2026. 7. 13. ~ 2026. 8. 11.)
4. 공고대상 및 행정처분 내역

업체명 (등록번호)	대표자	소재지	위반내용	처분사항	처분일
주식회사 성우아이디 건설 (대구-00955)	박*국	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4길8, 705호(대흥동)	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6조 - 등록기준 미달 (기술자 부족)	영업정지 1개월 2026. 7. 13. ~ 2026. 8. 11. (전기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1)	2026.6.9.

※ 전기공사업법 제6조(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)

-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 
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
-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함

⇒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: 과태료 100만원 (같은법 46조)

※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(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)

-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  
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: 등록취소

## 5. 안내사항

가.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할 경우 「전기공사업법」 제28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같은법 제42조제6호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(☎053-803-873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